



제301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4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
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
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4. 3. 13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,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나.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 (안 제6조)
- 다.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라.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규정(안 제8조~제10조)
- 마.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행정지원과
- 라. 입법예고 : 2024. 3. 7. ~ 3. 12.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
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방안 마련을 통해 민·관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 및 지역 현안과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,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■ 참고자료 1 :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: 37곳 조례 제정 (광역 4곳 + 기초 33곳)

[표1]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제정 현황 (광역 1곳, 시군 13곳)

(22. 12. 기준)

순번	지자체	조례명	제·개정일자	규정 내용		
				기본계획	위원회	지원조직
1	경기도	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	2022. 10. 31.	○	●	●
2	광명시	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	2022. 04. 19.	○	○	○
3	광주시	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1. 04.	○	●	○
4	구리시	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20. 12. 18.	○	●	●
5	군포시	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03. 16.	○	●	●
6	김포시	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7. 02.	○	○	○
7	부천시	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10. 12.	○	○	×
8	성남시	성남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	2021. 09. 13.	○	●	●
9	안성시	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	2021. 12. 17.	×	●	●
10	안양시	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	2022. 10. 20.	○	○	○
11	용인시	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	2022. 04. 13.	○	○	○
12	의왕시	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	2021. 09. 28.	○	○	○
13	평택시	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12. 18.	○	●	●
14	포천시	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21. 05. 06.	○	○	○

※ 기본계획 수립 시·군 : 없음

※ 위원회 구성 시·군 (6곳) : 성남, 안성, 광주, 군포, 평택, 구리

※ 지원조직 설치 시·군(5곳) : 성남, 안성, 군포, 평택, 구리

■ 참고자료 2 : 경기도 시·군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

[표2]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 (경기도 2곳, 시군 6곳)

(23. 12. 기준)

순번	지자체	센터명	설립일	운영형태	비고
1	경기도	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	2020. 03. 02.	민간위탁	
2	경기도	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	2022. 11. 30.	민간위탁	
3	군포시	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	2021. 05. 01.	민간위탁	
4	구리시	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	2011. 11. 08.	직영	
5	안성시	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	2022. 03. 22.	직영	
6	평택시	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	2022. 04. 01.	민간위탁	
7	성남시	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	2022. 04. 27.	직영	
8	광명시	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	2023. 07. 13.	민간위탁	

☑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 있어서 “비영리민간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.

1.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2.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
3.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지 아니할 것
4.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
5.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
6.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제3조(기본방향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등록비영리민간단체”라 한다)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(이하 “공익사업”이라 한다)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의 경우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라 비용발생 여부 결정되며, 제8조(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) 및 제11조(재정지원)의 경우 임의규정으로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2호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우리시는 이미 약 30개 부서에서 240여개(자체사업)의 공익활동 보조사업(민간보조)을 운영하고 있어,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개별단체 예산지원보다 정보제공,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 될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.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곽용환